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15호 2018. 4. 2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38호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
- 삼척시 공고 제339호 삼척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
- 삼척시 공고 제340호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4호 도로의 지정·공고 ----- 2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5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2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82 외3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4.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7-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82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70-1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50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복합활용(고천리,내미로리)	
3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17-28 (성내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대학로)명칭활용(도로명유지)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85-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 22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지형지물명칭활용(미로면,오십천)	
5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12-15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법정동명칭(사직동)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779-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32-35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26-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10-30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41-2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24-16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18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16-14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88 (갈천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1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578-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558	20180420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13-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길 108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312-2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5-18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14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0-2	강원도 삼척시 남양안길 11-8 (남양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복합활용	
15	강원도 삼척시 교동 486	강원도 삼척시 뱃나루길 11-20 (교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후진)옛명칭활용	
16	강원도 삼척시 뱃나루길 50 (교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후진)옛명칭활용	
17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31 (마달동)	폐지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18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156-51 (마달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19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1길 13-4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사직로분기)	
2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66-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달길 6-87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시설물명(소달초교)사용	
21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1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43 (증산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명칭활용	
2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27-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72-70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23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86-4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172 (우지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24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258 (우지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2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87-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84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6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22-11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중앙시장길 분기)	
27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8-8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용(기존도로명)	
28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8-11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용(기존도로명)	
29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22-20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용(기존도로명)	
30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71-22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용(기존도로명)	
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54-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313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35	20180420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9		이	하	여	백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기곡면 오저리 7-1	강원도 삼척시 기곡면 기곡천로 1482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70-1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50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3	강원도 삼척시 대항로 17-28 (성내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85-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간변로 22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5	강원도 삼척시 사적로 12-15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779-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32-35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리 226-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10-30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41-2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24-16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총계	32 건					

부여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18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16-14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준도로명활용
폐지	10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88 (갈산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준도로명)
부여	1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578-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로 4558	20180420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부여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13-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길 108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1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312-2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5-18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14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0-2	강원도 삼척시 남양안길 11-8 (남양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 부합활용
부여	15	강원도 삼척시 교동 486	강원도 삼척시 뫼나루길 11-20 (교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 (후진)옛명칭활용
폐지	16	강원도 삼척시 뫼나루길 50 (교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 (후진)옛명칭활용
폐지	17	강원도 삼척시 마담길 31 (마담동)	폐지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준도로명)

폐지	18	강원도 삼척시 마담길 156-51 (마담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준도로명)
폐지	19	강원도 삼척시 시적로1길 13-4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사적용(사적로분기)
부여	2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시리 66-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담길 6-87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시설물명(소담초교)사용
부여	21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1	강원도 삼척시 수루부인길 343 (증산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해당구내공무원명칭활용
부여	2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27-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72-70	20180420	건물철거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부여	23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86-4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172 (우지동)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준도로명)
폐지	24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268 (우지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준도로명)
부여	2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87-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84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26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2길 22-11 (남양동)	폐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사적용(중앙시장길 분기)

페이지	27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8-8 (남양동)	페이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동(기존도로명)
페이지	28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8-11 (남양동)	페이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동(기존도로명)
페이지	29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22-20 (남양동)	페이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동(기존도로명)
페이지	30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71-22 (남양동)	페이지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동(기존도로명)
부여	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조곡리 254-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조곡길 313	201804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3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35	20180420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동

삼척시 공고 제2018 - 338호

「삼척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삼척시 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08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 붙임 1.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20만원----- ----- -----.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 - 339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5조)
- 2017. 12. 31. → 2020. 12. 31.
- 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7조)
- 2017. 12. 31. → 2020. 12. 31.
-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08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 붙임 1.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친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2020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 ----- ----- 2020년 12월 31일 ----- ----- ----- ----- ----- -----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 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 - 340호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삼척시장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전문개정(법률 제14474호, 2016.12.27.공포, 2017.3.28.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관련 조례 및 지급목적 정비(안 제1조)
- 나. 관련법 분리에 따른 관련법 명기(안 제2조)
- 다. 산업시찰 실시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08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 붙임 1. 삼척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세정발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하 “세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매년 제2조제1항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세정발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하 “세입”)이라 한다 ----- -----.
제2조(지급대상자) ① 삼척시 세입징수 등에 대한 공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2조(지급대상자)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 ----- -----.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7. (생 략)	제3조(지급기준) ① -----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시장은 매년 제2조제1항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8-4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4-3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4-3
- 도로의 현황 : 길이 : 8.0m, 너비 : 0.8m, 면적 : 4.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덕산리	254-3	전	960	956	4.0	양**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로관리대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2018-4

대지위치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지번	254-3
건축주	양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2018-근덕면-신축신고-6
도로길이	8.0m	도로너비	0.8
		도로면적	4.0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덕산리 254-3	4.0	2018.04.11	양 * *	19**.**.**	양 * *

작성자: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정 철 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이 승 철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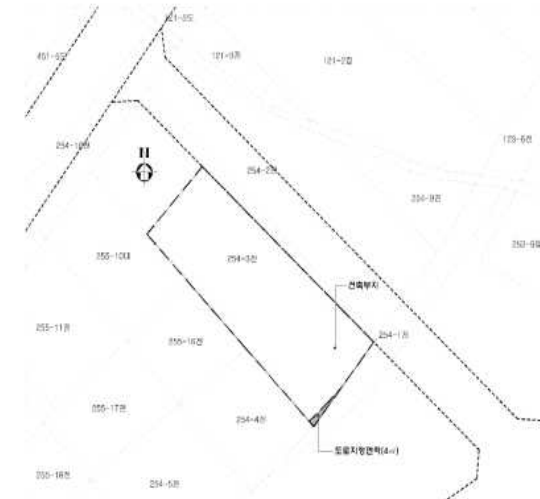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